



##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안내

- ✓ 그간 고용보험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, 고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.
- ✓ '17.12월의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실직자들이 생계 걱정을 덜면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금년 10.1.부터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이 30일 연장되고, 지급수준도 인상될 예정입니다.
- ✓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을 10.1.부터 0.3%p 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▶ 실업급여 보험료율 : 1.3%(현행) → 1.6%('19.10.1.)

↳ 사업주와 근로자 각 1/2(0.8%) 부담

▶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: 0.25% ~ 0.85%(현행유지)

- ✓ 앞으로도 납부하신 고용보험료를 철저하게 관리하고, 고용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※ 추가 문의 사항은 [고용노동부 1350](tel:1350) , [근로복지공단 1588-0075](tel:1588-0075) 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



#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상보험료 납부통지 예정 안내

## 부과고지대상 사업장

건설업 · 별목업을 제외한 전 사업장

2019년 10월분 보험료(납부기한 11.11.)부터 인상된 실업급여 요율 16/1,000을 반영한 고지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보내드릴 예정입니다.

$$\text{실업급여 월별 보험료} = \text{사업주부담* 실업급여 월별보험료} + \text{근로자부담** 실업급여 월별보험료}$$

\* 사업주부담 실업급여 월별보험료 = (개인별월평균 보수 × 8/1,000)의 합산액

\*\* 근로자부담 실업급여 월별보험료 = (개인별월평균 보수 × 8/1,000)의 합산액

## 자진신고대상 사업장

건설업 · 별목업 사업장

### ◎ 2019년 개산보험료를 일시납부 신청한 사업장

요율인상 이후 기간(2019.10.1.~2019.12.31.)에 대한 인상보험료의 추가납부 통지서(납부기한 12.10.)는 금년 10월경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.

$$\text{인상된 보험료} = \{ 2019\text{년 연간보수총액} \times 3/12 \} \times 3/1,000$$

### ◎ 2019년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 신청한 사업장

4분기 분할납부 납부서(납부기한 11.15.)와는 별도로 요율인상 이후 기간(2019.10.1.~2019.12.31.)에 대한 인상보험료의 추가납부 통지서(납부기한 12.10.)를 금년 10월경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.

$$\text{인상된 보험료} = \{ 2019\text{년 연간보수총액} \times 3/12 \} \times 3/1,000$$

### ◎ 2019.9.30.이전에 공사가 종료된 개별 유가공사

10.2.까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「고용 · 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」를 제출하셔야 인상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
보험료 산정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☎ 1588-0075